

2025년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(공공기술·장비지원) 모집 공고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함께 지역 내 공공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술창업 및 신사업 활성을 위해 「2025년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 사업 개요

- **사업목적:** 지역 공공혁신자원(출연연, 기술, 장비, 실증인프라 등) 활용 딥테크¹⁾분야 창업기업 및 신사업²⁾ 진출 희망기업 지원
1) 12대 국가전략기술 2) 대구 5대전략산업 유관분야
- **사업내용 :** 달성군 소재 기술창업자, 딥테크·신사업 진출 희망기업 대상 공공기술 컨설팅·장비 사용료 지원

2. 지원 내용

- **예산규모 :** 공공기술·장비지원 기업당 5백만원(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조정 가능)
- **사업기간 :** 공고 마감일 이후 25.11.30일 까지
- **지원대상 :** 달성군 내 창업기업 및 딥테크·신사업 진출 희망기업(컨소시엄 구성 가능*)
 - *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, 지사, 공장 등이 달성군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(중소기업)에 한하며, 사업자등록증 ·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·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함
 - **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(과제 종료 전 까지 입주해야 함)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- **지원내용 :** 공공연구기관,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대상 기술 자문 또는 보유 실험·검증장비 활용 직접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

구 분	지원 내용
연구시설·장비지원	· 달성군 내 기업의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연구시설·장비를 통한 실험·인증 지원
기술 컨설팅 지원	· 달성군 내 기업의 공공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

- ※ 기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「기술 자문·컨설팅 지원」, 「연구시설·장비지원」 중복으로 신청가능
- ※ 중복 신청 시 1지망 신청 분야 우선 지원 후, 예산 한도 내에서 2지망 추가 지원
- (기술자문·컨설팅 지원) : 공공기관 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(1회 30만원)
 - ※ 지원 가능 금액 한해서 동일 전문가 컨설팅 최대 3회 가능
- (연구시설·장비 사용 지원) :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또는 각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시설·장비 검색 및 예약신청, 연구시설·장비 사용비 직접지원(부가세 별도)
- * 사용료 등에 대해 선집행 이후 사업기간 종료 시 별도의 보고서(컨설팅의 경우 회의록 등), 거래명세서 등 안내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인정된 집행 금액을 지급 예정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사업공고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 등
- 공고 및 접수기간 : 상시 접수(예산 소진 시 별도 공고 없이 마감)
- 접수방법 :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(<https://pms.innopolis.or.kr>)을 통해 신청
- 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(053-592-8362)
- 제출서류 :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PMS에 업로드

번호	서류명	서식	파일형식
1	사업신청 공문	자체	PDF
2	사업계획서	사업계획서	PDF
3	사업자등록증(원본대조필)	-	PDF
4	법인등기부등본	-	PDF
5	중소기업확인서(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-	PDF
6	연구시설 장비 또는 기술컨설팅 사용 견적서	기관별 사용 양식 (기관 직인 必)	PDF

※ 확인서 발급사이트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mss.go.kr>)

4. 유의사항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

○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○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○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
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아니함

5. 관련 규정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
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